

株主各位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2017년도 전환주식 종류주주총회)

삼가 주주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상법 제 344 조 및 제 435 조에 의거 2017년도 전환주식 종류주주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일시 : 2017년 12월 29일 (금요일) 10시

2. 장소 : 서울시 중구 후암로 98 LG 서울역빌딩 20층 대회의실

3. 회의 목적사항

【부의 안건】

- 제 1 호 의안 : 전환주식 전환청구기간 연장의건 (별첨 참조)

4. 경영참고사항의 비치

상법 제 542 조의 4 제 3 항에 의한 경영참고사항은 당사의 홈페이지, 본점 및 지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및 KEB 하나은행 증권대행부에 비치(전자공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금번 우리회사의 주주총회에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 314 조 제 5 항 단서규정에 의거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시어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행사 하실 수 있습니다.

6. 주주총회 참석 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신분증
- 대리행사 :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 날인), 대리인의 신분증

2017년 12월 14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05

주식회사 STX

대표이사 김동휘 (직인생략)

[별첨]

[제1호 의안] 전환주식 전환청구기간 연장의 건

가. 대상 주식 : (주)STX 기명식 전환주식 1,271,000주

나. 전환청구기간 및 존속기간 연장 : 1년 연장

구분	기존	변경 후
전환청구기간	전환주식 발행일의 1개월 이후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전환청구기간 내에 전환권이 행사되지 아니하면, 전환청구기간 만료일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전환주식 발행일의 1개월 이후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전환청구기간 내에 전환권이 행사되지 아니하면, 전환청구기간 만료일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존속기간	본 주식의 존속기간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존속기간 내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되지 아니한 경우 존속기간 만료와 동시에 본 주식을 보유한 인수인의 전환청구가 없더라도 자동으로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본 주식의 존속기간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존속기간 내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되지 아니한 경우 존속기간 만료와 동시에 본 주식을 보유한 인수인의 전환청구가 없더라도 자동으로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 전환청구기간 및 존속기간 외 기타 발행조건 변경 없음

□ 전환주식 발행 조건

1. 액면가 : 주당 2,500원
2. 1주당 발행가격 : 주당 2,500원
3. 주식의 종류 : 기명식 전환 주식
4. 의결권에 관한 사항 : 전환주식은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5. 배당에 관한 우선권 : 전환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하여 보통주식에 대한 우선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6. 잔여재산 분배에 관한 우선권 : 회사의 청산시 보통주식에 대한 회사 잔여재산의 분배에 우선하여 지급받을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다.
7.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주식의 주주는 그 선택에 따른 전환청구에 의하여 전환주식을 아래의 전환조건에 따라 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 (1) 전환비용: 전환주식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보통주식의 수는 전환권이 행사된 전환주식 1주당 보통주식 1주로 한다.
 - (2) 전환가격: 전환가격은 1주당 2,500원으로 하고, 별도의 전환가격 조정은 없는 것으로 한다.
 - (3) 전환청구기간: 전환주식 발행일의 1개월 이후부터 2018. 12. 31까지로 한다. 다만, 전환청구 기간 내에 전환권이 행사되지 아니하면, 전환청구 기간 만료일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 (4) 전환청구 절차: 전환주식의 주주는 전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전환의 대상인 전환주식의 주권과 함께 회사에 제출한다.
 - (5) 전환의 효력발생: 보통주식으로의 전환은 그 청구를 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 다만,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그 청구를 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말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 (6) 미발행 수권주식의 유보: 전환청구기간 만료시까지 회사가 발행할 수권주식의 총수에 전환주식의 전환으로 발행 가능한 보통주식수를 유보한다.
8. 존속기간 : 본 주식의 존속기간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존속기간 내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되지 아니한 경우 존속기간 만료와 동시에 본 주식을 보유한 인수인의 전환청구가 없더라도 자동으로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